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번호 | 문제 | 근거 규정 및 해설 |
| 1 |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 사이의 내부거래가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수있는지 여부와 근거를 3줄 이내로 기술하시오. | K-IFRS 제1109호(금융상품) 문단 6.3.3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연결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항목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|
| 연결실체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·부채·손익은 연결 과정에서 제거되므로, 연결재무제표상 존재하지 않는 항목입니다. 따라서 내부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. 👉 정리: 연결실체 내부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소멸하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불가입니다. |
|  | 운송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,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,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 | (근거 규정) [출처] 상법 제796조 > "운송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,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,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" |
| - 이 조문은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운송의 중지나 운송물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, 이미 운송한 물량에 대해 해당 비율에 따라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운송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.  - 또한, 송하인의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, 즉 반환에 따른 비용이나 다른 처분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도 운송인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운송인이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줍니다.  - 예를 들어, 만약 운송인이 100개의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송하인이 50개 화물의 운송을 중지하라고 요청하는 경우,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50개에 대한 운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화물의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(예: 반송비용)을 송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